

■ 목 차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공상총국, 기업 간이말소등기정책 전면 시행..... 2  
 상표국,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 개정 ..... 2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시행방법」 발표..... 2  
 [캄보디아] 캄보디아 소액금융기관(MFI)의 대출이자 상한 규정 공표.....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업자 등록증(TDP) 재등록 제도 간소화..... 5  
 [이란] 외국인투자 관련 외국환 태환 시 시장환율 적용 ..... 6  
 [일본] 일본 2017년 주요 경제 일정 ..... 7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 산업 목록」 개정..... 9  
 [베트남] 전면 개정 베트남 민법, 2017년부터 시행..... 11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결합신고 대행..... 16  
 한국계 중국 자회사의 중국 내 지분 투자 관련 자문..... 16  
 한국 장비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투자 유치 관련 계약 검토 및 자문..... 17  
 한국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중국법인과의 상표양수도 분쟁 협상 참여..... 17  
 한국 기계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관련 검토 및 자문..... 18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창고보관계약 분쟁 자문..... 18  
 [캄보디아]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연구 용역 수행 ..... 19

##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공상총국, 기업 간이말소등기정책 전면 시행**

중국 공상총국은 「기업 간이말소등기 전면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간이말소의견')을 발표하였는바, 해당 의견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간이말소등기 관련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간이말소의견'에 따르면, 간이말소등기신청 시 기존의 일반말소등기와 비교할 때 우선 제출 서류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단, 해당 간이말소절차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네거티브리스트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정상경영 혹은 신용불량기업, 지분에 동결 조치가 취해지거나 질권이 설정된 기업, 행정적 강제조치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기업 등을 포함한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간이말소절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상표국,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 개정**

중국 상표국은 2017년 1월 4일에 새롭게 개정된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이하, '상표심리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상표심리기준'은 실무에서 운영되는 소리상표(sound trademark)에 대한 심사기준과 상표심사 실무에서 심사의견서의 운용기준 및 상표법상 특정 조항의 적용기준, 심리기준, 인정기준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소리상표와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의하면 음악성격의 소리상표를 신청하는 경우, 오선보 혹은 약보로 표현하되 문자를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음악성격이 아닌 소리상표를 신청하는 경우 문자로 표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시행방법」 발표**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시행방법」(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방법')을 발표하여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금융소

비자 보호방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 관련 효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최소 6개월에 1회씩 개인금융정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확인,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약관으로 개인 금융정보에 대한 사용 권한을 위임받거나 또는 사용 동의를 받는 경우, 반드시 약관의 해당 조항에 개인 금융정보 위임 범위 또는 사용 동의 범위 및 관련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와 같이 사용 권한을 위임하거나 또는 사용을 동의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를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소액금융기관(MFI)의 대출이자 상한 규정 공표**

2017년 3월 13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하 'NBC')이 공표한 규정에 따르면 2017년 4월 1일부터 캄보디아 소액금융기관(이하 'MFI')이 취급하는 소액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연 18%로 제한됩니다.

캄보디아는 소액대출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 NB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MFI 인허가를 보유한 기관이 60여 곳에 달하고, MFI 시장 대출자산총액이 약 30억 달러로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상당히 큰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MFI가 각광 받은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이자상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었는데, 이번에 NBC가 공표한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영업 중인 MFI의 대출거래구조 및 수익성 등에 상당히 파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사업자 등록증(TDP) 재등록 제도 간소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7년 2월 22일, 사업자 등록에 관한 개정 규정(Ministry of Trade regulation No. 8/M-DAG/PER/2/2017)을 발효하였습니다. 개정 전 구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TDP)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TDP) 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자 등록 사무소(이하 'KPP')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KPP는 신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갱신된 사업자 등록증(TDP)을 발급하여야 하며, 만일 KPP에서 3 영업일 내 갱신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 등록증(TDP)의 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유효하고 자동적으로 재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존 구 규정에 따라 재등록 절차에 부과되던 행정 비용 등도 면제되었습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이란 ■

### 외국인투자 관련 외환 태환 시 시장환율 적용

이란의 외환시스템은 외국환에 대한 이란 리알화의 환율을 필요에 따라 공식환율(Official Exchange Rate)과 시장환율(Free Market Rate)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식환율은 이란중앙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환율로서, 주로 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특정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신청인(이란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외국환을 할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16년 12월 기준 리알화 : 원화의 공식환율은 시장환율에 비해 약 15%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FIPPA)에 따라 외국인투자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이란은행을 통해 이란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리알화로 태환할 때에는 시장환율이 아닌 공식환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규모의 환차손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중앙은행은 2016년 하반기에 외국인투자를 위해 유입된 외화 자금(FIPPA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을 리알화로 태환할 때 공식환율이 아닌 시장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한 시행 지침을 이란의 각 시중 은행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 방침에 따라 시장환율이 적용될 수 있는 외화 자금에는 한국의 유로화결제시스템을 통해 유입되는 유로화 및 원화결제시스템을 통해 유입되는 원화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태환 시 시장환율이 적용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회사의 이란 현지지사 운영 자금이 해당 '외국인투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외국환의 태환 시 공식환율을 적용하게 되어 여전히 상당한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일본 2017년 주요 경제 일정

■ '닛케이 TEST'가 선정한 2017년 일본 국내 주요 경제 일정

	일본 국내	관련 정보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국회 소집</li> <li>- JAXA가 인공위성을 실은 세계 최소형 로켓 1호기 발사</li> <li>-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개정 육아·개호 휴업법 시행</li> <li>- 개인형 확정거출연금(iDeCo)의 대상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국회(通常国会)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 1월 중에 소집되어 회기는 150일간</li> <li>-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 일본 정부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a href="#">홈페이지</a>]</li> <li>- iDeCo(individ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 일본 확정거출연금법에 의거한 연금제도 [<a href="#">홈페이지</a>]</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 면역약 '옵디보(Opdivo)'의 약값 50% 인하</li> <li>-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부터 1년</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계노사교섭</li> <li>- 백화점 최대기업인 미쓰코시이세탄이 미쓰코시 치바점 폐점</li> <li>- 패밀리레스토랑 최대기업 스카이라크가 4월까지 24시간 영업점포를 70%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계노사교섭(春季労使交渉) : 일본에서 매년 봄에 이루어지는 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 운동</li> <li>- 미쓰코시이세탄 [<a href="#">홈페이지</a>]</li> <li>- 스카이라크 [<a href="#">홈페이지</a>]</li> </ul>

	일본 국내	관련 정보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카콜라이스트재팬과 코카콜라웨스트가 경영 통합</li> <li>- 석유정제·판매업 최대기업 JX홀딩스와 동업종 3위 도넨재너럴석유가 경영 통합</li> <li>-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카콜라이스트재팬 [<a href="#">홈페이지</a>]</li> <li>- 코카콜라웨스트 [<a href="#">홈페이지</a>]</li> <li>- JX홀딩스 [<a href="#">홈페이지</a>]</li> <li>- 도넨재너럴석유 [<a href="#">홈페이지</a>]</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부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수상관저 [<a href="#">홈페이지</a>]</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구입 시의 소비세가 비과세로</li> <li>- 해운업계 빅3인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가와사키키센 3개 회사가 컨테이너 사업을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혼유센 [<a href="#">홈페이지</a>]</li> <li>- 쇼센미쓰이 [<a href="#">홈페이지</a>]</li> <li>- 가와사키키센 [<a href="#">홈페이지</a>]</li> </ul>
시기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도의회 의원 선고 (7월 22일 의원 임기 만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도의회 [<a href="#">홈페이지</a>]</li> </ul>

[참조 : Nikkei Style, 2017. 1. 3.]



##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 산업 목록」 개정



(법무법인 지평 김옥림 외국변호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7년 2월 17일에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 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발표하였는데 해당 목록은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목록의 발표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17년 1월 중순에 국무원 문건으로 전국적으로 '대외개방 확대, 외자 유치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문건에서는 연해 지역의 외국인투자 산업을 중서부 및 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2013년에 개정되어 시행 중인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을 개정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은 2000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후 2017년 개정으로 네 번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은 명칭과 달리 중서부 지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 3성, 해남성, 충칭 직할시를 포함한 22개 성급 지역(이하 '성(省)')을 망라한 것으로 연해 발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목록은 각 성의 산업 발전 현황, 보유 자원 및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서성의 경우 광산 관련 산업을 다수 포함, 흑룡강성의 경우 임업 관련 산업 다수 포함, 해남성의 경우 관광 연계 산업을 다수 포함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와 같이 각 성별로 특정 우위 산업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지만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체적으로 중서부 지역의 전통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 추진, 하이테크 산업 발전 지원, 서비스업 발전 장려, 노동력 우위가 있는 지역에 대한 방직업 등 노동밀집형 산업 발전 추진, 사회기반시설 구축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품목이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에 해당되면, 투자총액 내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 토지 불하 시 규정된 <공업용지불하 최저기준>의 70%를 한도로 불하가격 인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을 전제로 15%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의 개정으로 기존 연해 지역에 투자하였던 외국인투자기업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종전의 동남아 지역으로 대거 철수하는 국면을 완화하고 중국의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 전면 개정 베트남 민법, 2017년부터 시행



(법무법인 지평 신주연 변호사)

베트남 민법은 1995년 제정된 후, 2005년 전문 개정을 거쳐, 2015년 11월 24일 또 한 번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개정된 민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① 법원의 민사재판 거부 금지, ② 공증·인증을 받지 않은 계약서의 효력 인정, ③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④ 소멸시효 완성 주장 제한, ⑤ 담보 방법으로서 소유권유보 및 유치권, ⑥ 담보 실행 방법, ⑦ 사정변경의 원칙, ⑧ 금전대차계약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거나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체결되는 계약에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고, 소멸시효 기간 또한 이를 따라야 하므로, 베트남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민사 거래를 할 때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민사관계의 규율 근거

개정 민법은 민사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 관습의 적용을 인정하는 외에, 적용할 관습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유추해석과 판례 및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및 형평의 원칙을 법률문제의 판단 근거로 인정한 것은 개정법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베트남 사법 실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판례 법리가 발달하지 못한 현지 사정상 판례와 형평의 원칙의 적용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2. 무효인 계약의 예외적 효력 발생

베트남에서도 모든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모든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계약은 관련 법률에서 계약서 작성 또는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면 또는 공증은 계약의 효력 요건이 되어,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개정 민법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① 서면 체결이 필요한 계약의 서면 작성을 하지 않았으나, 어느 일방이 계약의 2/3 이상 이행한 경우
- ② 공증을 받아야 하는 계약의 공증을 받지 않았으나, 어느 일방이 계약의 2/3 이상 이행한 경우

위 경우, 의무를 이행한 당사자는 법원에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선의의 제3자 보호

개정 민법은 우리나라의 선의취득과 유사하게,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자산을 취득한 거래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등기·등록되지 않는 동산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 경우, 무효 거래 당사자로부터 별도 거래로 그 동산을 선의로 양수한 취득자(단, 도난품과 유실물은 제외)
- ②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 경우, 무효 거래 당사자로부터 별도 거래로 그 동산을 선의로 양수하고 등기·등록한 취득자
- ③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거래를 등기·등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법원 판결이나 관할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경매 등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제3자는 추후 판결이나 행정 결정이 반복되어 처분자가 권한 없음이 밝혀지더라도 유효하게 자산 취득

#### 4. 제소기간

베트남 민법은 의무가 소멸하는 기간(소멸시효)을 법에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의 규정만 두고,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달리 민사계약 관련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래 제소기간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때”를 기산일로 하여 2년이었으나, 개정 민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알았어야 알았어야 했던 때”를 기산일로 하여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소기간은 종래와 동일하게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때로부터 2년입니다. 개정 민법 발효일(2017. 1.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제소기간도 개정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제소기간 도과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주장(항변)할 때에만 법원이 판단하며, 당사자는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 5. 토지사용권과 지상물 중 어느 하나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시 권리관계

베트남 민법은 한국과 달리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데에 난제가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① 토지사용권만 저당권 설정하였으나, 저당권 설정자(토지사용권자) 소유의 지상물(건물 포함)이 있을 경우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지상물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저당권자는 토지사용권과 지상물에 대해 함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음
- ② 토지사용권만 저당권 설정하였는데, 타인 소유의 지상물이 있을 경우 : 당사자들이 달리 합

의하지 않는 한, 저당권 설정자의 지상물 소유자에 대한 권리의무(예를 들어 토지임대계약상 임대인 지위)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됨

- ③ 지상물만 저당권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지상물 소유자)가 토지사용권도 보유한 경우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토지사용권과 지상물에 대해 함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음
- ④ 지상물만 저당권 설정하였는데, 토지사용권은 타인이 보유한 경우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물을 취득하는 자는 저당권 실행 완료 시까지 저당권 설정자가 보유한 권리의무의 범위 내에서 지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저당권 실행 완료 후 토지에 대한 이용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됨)

## 6. 소유권유보부매매 및 유치권

종래 민법상 담보로는 ① 질권, ② 저당권, ③ 이행보증금, ④ 임차보증금, ⑤ 에스크로, ⑥ 보증, ⑦ 정치/사회단체 보증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에 더하여 ⑧ 소유권유보부매매와 ⑨ 유치권을 추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가 매매계약의 특수한 형태로 다루어지는 반면, 베트남 개정 민법은 담보제도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른 담보권들과 동일하게 담보등록소에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종래 민사계약의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담보제도의 한 종류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유권유보부매매와 달리 담보등록소의 등록으로 대항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 7.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변경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사정변경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지로 인한 손실이 변경된 계약 이행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정변경의 원인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객관적인 원인에 의할 것
- ②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을 것
- ③ 당사자들이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체결하였을 것
- ④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것
- ⑤ 부정적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영향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없을 것

## 8. 이자율 제한

종래에는 대출 이자율 한도를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150%로 제한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자율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은행 고시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고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자율에 대한 제한이 유명무실하였습니다.

개정 민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초과 부분에 대한 합의는 무효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이자율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 한국 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결합신고 대행

지평은 한국 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결합신고 대행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승수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 한국계 중국 자회사의 중국 내 지분 투자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계 중국 자회사의 중국 내 지분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 한국 장비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투자 유치 관련 계약 검토 및 자문

지평은 한국 장비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투자 유치 관련 계약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 한국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중국법인과의 상표양수도 분쟁 협상 참여

지평은 한국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중국법인과의 상표양수도 분쟁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외국변호사

## 한국 기계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관련 검토 및 자문

지평은 한국 기계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관련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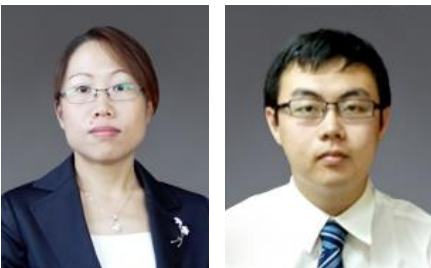


경영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창고보관계약 분쟁 자문

지평은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창고보관계약 분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경영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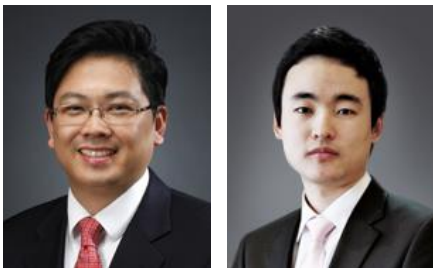
■ 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

##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연구 용역 수행

지평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지원 사업에 법률자문사로 참여하여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EF) 및 증권거래위원회(SECC)를 위한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연구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소(CSX)에 상장된 기업의 수는 4개에 불과하고 증권거래량도 저조한 상황인데, 지평은 본 용역을 통해 캄보디아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연구하고, 한국과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캄보디아에 적합한 규정 제·개정 방안과 IPO 및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용역을 계기로 캄보디아 증권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